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, 일반선박도 책임보험 의무화 개정

□ 국해부는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,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'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'(이하 유배법) 개정안을 지난 27일에 공포함.

□ 본 개정 법률은 피해규모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우리나라가 추가기금 협약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입법과정 없이 이를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됨.

o 따라서 지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,2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대 1조 2천억원(7억 5천만 SDR)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짐.

□ 선박연료유 협약이 국제발효('08.11.)됨에 따라 동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, 선박연료유 협약 적용대상인 총톤수 1,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함.

o 지금까지는 유조선에 의해 운송되는 유류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해 왔으나,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함.

□ 또한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류저장부선 중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이동용 유조부선과 같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.

□ 유배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신설 등 하위법령 개정 및 (구)보장계약증명서 반납 의무 등과 같은 불필요 규제도 정비될 계획임.

(유류오염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피해보상,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, 5/27)